

【 18 】 동두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규약안

제출연월일 : 2004. 12.

제 출 자 : 양주시장

1. 개정이유

- 제35회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개최일시: 2004.8.20)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실무협의회의에서 개정하기로 의결되었고, 권역내의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어
- 현 실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여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둔다”에서 “회장이 속한 시·
군에 둔다”로 변경함 (안 제2조)
- 나. 양주군, 포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군 명칭을 변경
하고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표기함 (안 제3조)
- 다. 회장은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
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를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계
장”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담당관) 및 기
획업무담당(팀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9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동두천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동두천시”를 “회장이 속한 시·군”으로 한다.

제3조중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을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두천시장, 파주시장, 양주군수, 연천군수, 포천군수”를 “파주
시장, 포천시장, 양주시장, 동두천시장, 연천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자치
단체장인 동두천시장으로 한다”를 “회장은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
수가 윤번제로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동두천시 부시장”을 “회장이 속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을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
장(담당관)”으로 하고, “동두천시 기획계장”을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중 “간사”를 “서기”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담당관)으로 한다.
-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회장이 속
한 시·군의 기획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임기)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처음 맡는 회장의 임기는 2006. 6. 30
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事務所 設置) 協議會의 事務所는 東豆川市에 둔다.	第2條(事務所 設置) 會長이 屬한 市·郡에 둔다.
第3條(構成) 協議會는 東豆川圈 關聯 地方自治團體인 東豆川市, 坡州市, 楊州郡, 遷川郡, 抱川郡으로 구성한다.	第3條(構成) 坡州市, 抱川市, 楊州市, 東豆川市, 遷川郡, 抱川郡으로 구성한다.
第4條(組織) ① 協議會의 委員은 東豆川市長, 坡州市長, 楊州郡守, 遷川郡守, 抱川郡守로 하고 會長은 中心自治團體長인 東豆川市長으로 한다 ② (생략) ③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東豆川市 副市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생략)	第4條(組織) ① 坡州市長, 抱川市長, 楊州市長, 東豆川市長, 遷川郡守로 會長은 道內의 市·郡順序에 따라 市長·郡守가 輪番制로 맡으며, 任期는 2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會長이 屬한 市·郡의 副市長·副郡守가 會長이 屬한 市·郡의 企劃業務擔當(팀장)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第9條(事務處理) ① (생략) ② 幹事는 東豆川市 企劃監查室長으로 하고 書記는 東豆川市 企劃係長으로 한다.	第9條(事務處理) ① (현행과 같음) ② 會長이 屬한 市·郡의 企劃(監查)室長(擔當官)으로 會長이 屬한 市·郡의 企劃業務擔當(팀장)로 한다
第10條(會議錄 作成) 協議會의 幹事는 會議錄을 作成 管理하여야 한다	第10條(會議錄 作成) 書記 1인을 두되, 書記는 會長이 속한 市·郡의 企劃業務擔當(팀장)으로 한다
제14조(實務協議會) ① ~ ② (생략) ③ 實務協議會 委員長은 東豆川市 企劃監查室長으로 하되 幹事 및 書記는 第9條 第1項, 第2項을 準用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제14조(實務協議會)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實務協議會 委員長은 會長이 屬한 市·郡의 企劃(監查)室長(擔當官)으로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實務協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書記 1인을 두되, 書記는 會長이 속한 市·郡의 企劃業務擔當(팀장)으로 한다

東豆川圈行政協議會規約 中 改正 規約(案)

- 全 文 -

東豆川圈行政協議會

東豆川圈行政協議會規約中 改正規約(案)

第1條(目的) 이 규약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8條 및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事務의 一部를 共同으로 協議 處理함으로써 圈域內의 均衡있는 發展과 廣域行政의 效率的인 推進을 圖謀하기 為하여 東豆川圈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 라 한다)를 設置 運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事務所 設置) 協議會의 事務所는 會長이 屬한 市·郡에 둔다.

第3條(構成) 協議會는 東豆川圈 關聯 地方自治團體인 坡州市, 抱川市, 楊州市, 東豆川市, 漣川郡으로 構成한다.

第4條(組織) ① 協議會의 委員은 坡州市長, 抱川市長, 楊州市長, 東豆川市長, 漣川郡守로 하고, 會長은 道內의 市·郡順序에 따라 市長·郡守가 輪番制로 맡으며, 任期는 2년으로 한다.

② 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③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속한 市·郡의 副市長·副郡守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協議會 委員에게 特殊이한 事由發生時 副市長, 副郡守가 代理委員으로 參席 할 수 있으며, 討議와 表決權을 갖는다.

第5條(機能) 協議會는 다음事項을 協議, 決定한다.

1. 都市計劃의 樹立施行 및 變更에 關한 事項
2. 都市計劃 區域內의 建築 및 土地利用에 關한 事項
3. 公共施設의 設置, 管理 및 運營에 關한 事項
4. 住宅團地 및 工業用地等의 造成事業에 關한 事項
5. 行政區域 境界管理等의 事務의 協調, 調整 또는 共同處理에 關한 事項

6. 資源의 開發, 調査에 關한 事項
7. 環境污染防治 및 監視에 關한 事項
8. 市.郡間 連結버스 路線의 新設, 延長等 交通網 擴充에 關한 事項
9. 主要 連結道路等 道路網의 新設, 變更, 擴張, 鋪裝 等에 關한 事項
10. 上.下水道의 新設에 關한 事項
11. 市.郡 相互間의 資料, 情報, 技術의 交換
12. 其他 廣域行政, 廣域開發 途行上 必要한 事項

第6條(協議方法) ① 委員은 協議案件을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會長은 實務協議會의 事前檢討를 받아 30日 以內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協議案件의 合意는 委員 全員의 賛成으로 한다.

第7條(會議) ① 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② 定期會議는 年 2回로하되 2月과 3月사이, 8月과 9月사이에 會長이 召集한다.

③ 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되 協議會 委員의 要求가 있을 때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 會長은 協議會 開催 후 14日 以內에 協議會 開催結果를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8條(會議參席) ① 協議會를 圓滑하게 運營하기 為하여 道의 公務員이 參席할 수 있다.

② 協議會에는 協議事項과 關聯이 있는 市郡 室課所長이 陪席하여 關聯 資料를 提出하거나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9條(事務處理) ① 協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為하여 幹事1人과 書記1人을 둔다

② 幹事는 會長이 屬한 市·郡의 企劃(監查)室長(擔當官)으로, 書記는 企劃業務擔當(팀장)으로 한다

第10條(會議錄 作成) 幹事(또는 書記)는 會議錄을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第11條(資料提出 要求) 協議會는 事務處理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供, 意見의 開陳等 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其他必要한 境遇에는 關係機關 公務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2條(未合意事項 調整要請) 會長은 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해도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道知事에게 이에 대한 調整要請을 하여야 한다.

第13條(諮詢委員) ① 協議會는 協議事項에 關한 諒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諒問 委員을 둘 수 있다.

② 諒問委員은 國家의 特別行政機關의 長, 關聯 公共團體의 長 및 關係專門家 中에서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委嘱한다.

③ 公務員이 아닌 諒問委員에 대하여는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4條(實務協議會) ① 協議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爲하여 實務協議會를 構成運營한다.

② 實務協議會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監查)室長(擔當官)을 委員으로 構成하되 上程案件에 따라 關係 室課所長이 陪席 參與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③ 實務協議會 委員長은 會長이 屬한 市·郡의 企劃(監查)室長(擔當官)으로 하되, 書記는 第9條 第1項, 第2項을 準用한다.

④ 會議는 實務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實務委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召集하여야 한다.

⑤ 實務委員長은 協議案件의 實務 檢討意見書를 協議會 委員에게 提出하고 協議會 開催時 그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15條(經費負擔)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運營經費는 會議를 開催하는 市·郡에서 負擔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特別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協議會에서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할 수 있다.

第16條(會計) 協議會의 經理狀況은 每 會議때마다 報告하여 協議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17條(規約改定) 이 規約의 改定은 委員 全員의 賛成으로 한다.

第18條(補則) 協議會의 運營上 必要한 事項은 協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規約은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規約廢止) 이 規約의 施行과 同時に 東豆川圈行政協議會規約('96.6.12改定)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會長任期) 이 規約을 適用하여 처음 맡는 會長의 任期는 '06. 6.30까지로 한다

第4條(經過措置) 이 規約 施行當時 從前의 規約에 의하여 決定된 事項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2004年 月 日

坡 州 市 長

抱 川 市 長

楊 州 市 長

東 豆 川 市 長

漣 川 郡 守